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8-92호
2018. 12. 14.(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고 시(2)

-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고시 제2018-170호)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8-173호)8

공 고(5)

- 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이득금(2010년 9차수)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8-946호)9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8-950호) ...10
-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8-957호) ...11
-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고 제2018-963호)14
- 신탄진역 앞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공고 제2018-966호)15

입법예고(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968호)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969호)30

공									
람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2018. 12. 6.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18. 10. 1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행복실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행복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행복실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2.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
3. 사무총장 1명

4. 감사 2명

- ② 공동회장과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③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을 대표하는 부회장과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상임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3장 협의회 운영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상임(공동)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과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

고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상임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상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임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상임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행복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 위촉한다. 단,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과 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및 사후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6조(사무국)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이에 관

련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재정

제17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혹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별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 역	지방자치단체명	비 고
서울	서울시(고문), 종로구, 중구, 도봉구, 양천구, 강남구, 은평구, 서대문구	8
인천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4
광주	서구, 동구, 광산구	3
대전	대덕구, 유성구	2
경기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구리시,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8
강원	춘천시, 태백시	2
경북	구미시, 의성군	2
경남	통영시	1
충북	증평군	1
충남	서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4
전북	전주시, 완주군, 고창군	3
전남	나주시	1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신탄진동 117-30	신탄진로834번길 15	2018 12 14	건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8,340 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평촌동 152	무진니1길 67	2018 12 14	건물신축	동네가 무진장 발전하는 의미의 무진니 자연마을 명에서 유래	
신일동 1709	신일서로125번길 90	2018 12 14	건물신축	신일서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250 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이득금(2010년 9차수)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에 의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항암치료제초과수급)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의료급여법 제23조, 민법 제74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3. 공고기간: 2018. 12. 14.~2018. 12. 29.(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금액	비고
이○진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38번길 4* 20*호 (갈마동, 제*주택)	우편물이 반송함에 투합 됨.	1,505,670원	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이득금(2010년 9차수)

5. 공시송달내용 및 유의사항

-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체납)를 통보 하오니 **2018.12.31.(월)까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654-099192-17105 (대덕구청 의료기금(특)수입금출납원)

-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대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담당(☎ 042-608-6383)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 2018. 12. 14 ~ 2018. 12. 28(15일간)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 대상업소 : 대덕구 중리동로 84(이모네떡자방)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28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위생과 위생안전담당 ☎(042)608 - 6903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직권폐업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체육시설업자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 2018. 12. 14. ~ 2018. 12. 28. (14일간)
2. 처분제목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3. 처분예정일 : 2018. 12. 31.(월)
3. 처분원인 : 체육시설업 폐업통보 미이행
4.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5. 처분대상

업종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처분예정사항
체육도장업	용인대 천마 태권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5번길 3, 5층 (송촌동)	천○철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송촌검도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81번길 40, 지하2층 (송촌동)	김○현	직권폐업
체육도장업	럭키태권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북로 10 (법동, 2층)	이○진	직권폐업

체력단련장업	K&K 휘트니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7(신탄진동)	전○수	직권폐업
당구장업	킹당구클럽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81번길 10 1, 4층 (송촌동)	길○욱	직권폐업
당구장업	하이키크당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20 (오정동, 2층)	주○택	직권폐업
당구장업	한남당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흥도로 117 (중리 동)	김○호	직권폐업
당구장업	궁중당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11 (오 정동)	송○섭	직권폐업

6. 문의처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나. 담당부서 : 대덕구청 문화체육과 (☎042-608-6273, FAX 042-608-3823)

7. 기타사항

가.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서면·구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12.28.
(금)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폐업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덕구청 문화체육과(☎042-608-6273)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당사자	성명(명칭) <hr/> 주소 (전화번호: _____)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고지문'을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 고 명 : 상세주소 부여 고지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2. 14. ~ 2018. 12. 27.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별첨 참조)
5. 기타사항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 민원지적과(☎ 042-608-530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역 앞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

※ 참고사항

- 본 주차장은 신탄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내 위치하여, 수탁기간중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주차장 현황 및 조건

주차장명	위 치	급지	면적 (㎡)	주차 면수	운영시간	최저입찰가격
신탄진역 앞 공영주차장	신탄진동 140-25	3	1,537	41면	00:00 ~ 24:00	18,01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가격은 총수탁기간(2년중) 무료개방일(법정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수탁료임을 감안하여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탁기간 : 2년 (2019. 02. 01. ~ 2021. 01. 31.)

2. 입찰 및 계약방법

-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제

3. 입찰참가자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법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으로서 우리구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4. 입찰참가방법

-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온비드” (<http://www.onbid.co.kr>)에 접속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입찰집행(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2018. 12. 14. 10:00 ~ 2018. 12. 21. 16:00	2018. 12. 24. 10:00	http://www.onbid.co.kr	대덕구청 입찰집행관 PC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취소는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기간 내에 우리구에 서면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취소 후에는 동일 물건에 대하여 다시 입찰 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입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 처리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외환은행” 또는 “신한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를 “외환위탁 또는 신한위탁 계정”입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7. 낙찰자의 결정방법

- 1인 이상 참여한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1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유효한 입찰로 성립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의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주민등록등본(법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 지참).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사본) 1부.
- 손해(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가입증명서) 1부.
- 제출기한 : 2019. 01. 07.(월) 16:00까지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 시스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

10. 관리계약 체결

- 가.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 낙찰자의 제출서류를 지정기한내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함
- 나. 계약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포기한 경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로 귀속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체결 유의사항

- 낙찰자는 **2019년 1월 7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및 수탁료 납부 : 계약 체결시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료(=낙찰금액)는 선납 또는 분기별 분할 납부(매분기 개시전월 납부통보에 의거 납부 / 분할납부시 연1.93%의 이자납부)

13.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주요

위탁조건(운영기간, 유료운영시간, 주차요금등)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 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 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주차요금 및 주차장관리자 실명표시제 실시 등 수탁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는 조건부 선정이오니, **공고문 및 계약서(안)** 등을 숙지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입찰참가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입찰시 입찰조건 및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와 입찰금 გადა제출로 인한 적자발생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 문의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1588-5321)
- 계약, 위치,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대덕구청 교통과 (042-608-5292)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여부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 입찰보증금납부여부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 입찰결과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2018년 12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노동권 보호 등 노동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제시와 체계적인 도입 및 추진으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대상 등 조례 총칙에 대해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나. 노동정책 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다.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20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 01. 0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에너지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경제과(전화: 042-608-6483, FAX: 042-608-3831, E-mail: staberi@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경제과 담당자 정미래(전화: 042-608-64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장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경제과장이 된다.

제1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노동권리보호관) ① 구청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권리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기 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3. 구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에너지경제과	
담 당 자 연 락 처	정 미 래 042-608-6483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공익사업의 발굴과 이를 추진하는 노동단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추진을 통해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대덕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 01. 0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에너지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경제과(전화: 042-608-6483, FAX: 042-608-3831, E-mail: staberi@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경제과 담당자 정미래(전화: 042-608-64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 상담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 근로자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
4.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상생의 노사관계 발

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에너지경제과	
담 당 자 연 락 처	정 미 래 042-608-6483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